

## 「2026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「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관리비 지원사업」을 실시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6월 4일

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

### 1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 :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

나. 사업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6. 12. 31.

다. 접수기간 : 2026. 6. 4. 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
라. 지원대상

- 경기도 관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
※ 단,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

- ① 「물환경보전법」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(이하 '관제센터'라 한다)로 자동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
-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

### 2 지원항목

가. 설치비

-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
-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를 교체·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

## 나. 유지관리비

-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①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
  - ②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

### 3 보조금 지원기준

가. 설치비 :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

<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>

(단위 :천원)

구분	설치항목	지원 기준금액	지원금액		자부담 (40%)
			국비(40%)	지방비(20%)	
합 계		200,000	80,000	40,000	80,000
측정기기	pH	6,130	2,452	1,226	2,452
	TOC	63,262	25,305	12,652	25,305
	SS	12,123	4,849	2,425	4,849
	T-N	44,990	17,996	8,998	17,996
	T-P	43,012	17,205	8,602	17,205
부대시설	자동시료채취기	14,693	5,877	2,939	5,877
	자료수집기 (Data Logger)	10,665	4,266	2,133	4,266
	유량계	5,125	2,050	1,025	2,050

- 주) 1.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
2.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,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 
 ※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설치기록부 등) 제출
3.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
4.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

나. 유지관리비 :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

<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>

(단위 :천원)

점검대상		지원 기준금액(년)	지원금액		자부담 (40%)
항 목	주기		국비(40%)	지방비(20%)	
pH (부대시설점검등 공통경비포함)	월 1회	2,622	1,049	524	1,049
	월 2회	3,258	1,303	652	1,303
	월 4회	4,743	1,897	949	1,897
SS	월 1회	1,148	459	230	459
	월 2회	1,495	598	299	598
	월 4회	2,305	922	461	922
COD	월 1회	11,740	4,696	2,348	4,696
	월 2회	13,015	5,206	2,603	5,206
	월 4회	15,985	6,394	3,197	6,394
TOC	월 1회	10,482	4,193	2,096	4,193
	월 2회	11,755	4,702	2,351	4,702
	월 4회	14,725	5,890	2,945	5,890
T-N	월 1회	10,738	4,295	2,148	4,295
	월 2회	11,895	4,758	2,379	4,758
	월 4회	14,597	5,839	2,919	5,839
T-P	월 1회	11,410	4,564	2,282	4,564
	월 2회	12,567	5,027	2,513	5,027
	월 4회	15,268	6,107	3,054	6,107

- 주) 1. 유지관리비 지원 기준금액은 신청한 측정항목별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
 2. 보조금 신청금액은 산정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제 유지관리비가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함  
 예) 설치항목이 pH, SS, T-P이고 점검횟수가 월 1회인경우 지원 기준금액은 15,180천원 (2,622 + 1,148 + 11,410)으로 산정함.  
 3. 유지관리비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**소모품 교체비, 정도검사비를 포함하고, 정도검사비는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**  
 4. 점검 횟수가 월 3회인 경우는 월 2회 기준을 적용하며, 월 4회 이상인 경우 월 4회의 기준을 적용  
 5. 점검 횟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
 ① 유지관리 계약 체결: 계약서에 명시된 점검 횟수  
 ② 사업장 직접 관리: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호」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점검·관리사항의 횟수  
 6.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 
**※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**

## 4 신청(접수)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6. 6. 4. 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
나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

※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

- 접수처 : (11158)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,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 
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

- 문의처 :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 
(☎ 031-539-5132 또는 min4003@gdtp.or.kr)

다. 신청서류 목록

연번	내용	비고
1	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	[서식 1]
2	사업자등록증	공고일 이후 발급분
3	중소기업 확인증	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	[서식 2]
5	설치비 지원사업장 -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-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(견적서 등) - 기기 교체 시,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설치기록부 등)	
6	운영사업비(유지관리비) 지원사업장 - 유지관리업체 현황(회사명, 주소, 연락처 담당자 등) -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-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- 정도검사기록부(정도검사 실시 시 제출)	
7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[붙임 1]
8	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	[붙임 2]
9	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	[붙임 3]
10	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	[붙임 4]
11	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(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) ※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※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(수익금) 반납 필수	

## 5 사업 진행 절차

단계별	추진절차
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,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</li> </ul>
접수 및 서류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사업장 → 경기대진테크노파크</li> <li>서류검토 및 보완 요구</li> </ul>
현장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대진테크노파크 → 신청사업장</li> <li>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</li> </ul>
선정기업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대진테크노파크 → 선정사업장</li> </ul>
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(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사업장 → 경기대진테크노파크</li> </ul>
보조금 지급 요청(설치·운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사업장 → 경기대진테크노파크</li> </ul>
준공검사(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</li> </ul>
보조금 지급(설치·운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조금 지급(경기대진테크노파크 → 선정사업장)</li> </ul>
보조금 사용 관리·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조금 지급(경기대진테크노파크 → 선정사업장)</li> </ul>
정산 및 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과보고</li> </ul>

## 6 기타사항

가.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

-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-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
-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(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)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
- ④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

-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  - ⑥ 폐업, 부도,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
  - ⑦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나.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- 다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「수집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(환경부, 2022. 4.)」을 따름